

강화군 복지재단 규정(공포)

공포번호 제13호

1. 제 명 : 강화군 복지재단 인사 규정

2. 개정이유

- 강화군복지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업무수행 불가 등의 사유 발생시 해임이 가능하도록 복지재단 인사규정의 관련 조항을 신설함.

3. 주요내용

- 인사규정 제6조(인사위원회 설치)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임을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
2. 재단의 목적에 위배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3. 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경우
4.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

제16회 강화군복지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「강화군 복지재단 인사 규정」을 이에 공포한다.

2024년 12월 16일

강화군복지재단이사장 오 윤

